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586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3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4월 19일 1차상정·검토보고·심사보류】

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4월 24일 2차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)

1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19조제2항제3호)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 참조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현재 정책 기대효과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로 정책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¹⁾, 지방자치단체는 공

1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이에 개정안은 시립여성발전센터 5개소에서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료의 10%로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임.
- 감면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% 내·외 할인을 적용하고,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5% 내·외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.

〈제로페이 감면 적용안〉

이용요금 수요탄력성	수요탄력성 낮아 이용 확장성 낮은 시설	수요탄력성 높아 이용 확장성 높은 시설
이용요금이 높은 시설	5% 이하	10% 이하
이용요금이 낮은 시설	10% 이하	30% 이하

*5% 이하 : 이용요금은 높는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, 예) 대관료 등

*10% 이하 :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,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, 예) 주차요금, 사용료 등

*30% 이하 :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, 예) 입장료 등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- 현재 법이나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대상자, 경로자, 영유아, 70세 이상 부모부양자, 자원봉사자, 다자녀·다둥이 가정, 모범납세자, 병역명문가 등에게 공영주차장이나, 체육·문화시설 및 시립 장례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, 기존의 감면 대상은 취약계층이거나 그 공로를 인정하여 혜택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,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 조례안에 따른 감면은 그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.
- 한편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시, 민간에서 경쟁 관계로 인식할 수 있는 수영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경우,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□ 한시제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성

-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감면조치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해보아도 최대 6개월내외의 기간 동안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- 개정안을 통한 감면이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비를 통한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한정 지속한다는 것은 다소 무

리가 있을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를 범위로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례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제도는 통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비교적 단기로 판단되는 6개월이라는 감면 시행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- 다만 감면의 사유가 타 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 사유와는 다소 이질적이고, 6개월이라는 한시적 시행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 문제,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붙임 : [별표 8] <개정 2017. 9. 21.>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 (제18조

제1항 제3호 관련)

구 분		단 위	기준금액	부 과 기 준
직업교육		1명 1개월	15,000원~ 100,000원	시장이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해당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. 1. 직업교육: 100,000원 2. 생활문화: 50,000원
생활문화		1명 1개월	15,000원~ 50,000원	
보육실 이용료		1명 1개월	5,000원~ 10,000원	○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
수영장	수강료	1명 1개월	40,000원~ 80,000원	○ 월 20시간 이내
	자유이용료	1명 1회	2,500원~ 3,000원	
헬 스		1명 1개월	40,000원~ 80,000원	
에어로빅 (요가)		1명 1개월	40,000원~ 60,000원	
강 당		1시간	10,000원~ 30,000원	○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,000원 ○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○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교육실 및 회의실		1시간	5,000원~ 20,000원	○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○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○ 토, 일,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
세미나실		1시간	10,000원~ 30,000원	
시청각실		1시간	20,000원~ 40,000원	
창업보육 지원시설	창업보육 실	m ² 당/1개월	1,000원~ 5,000원	○ 보증금 1,000,000원 별도 ○ 관리비 별도
	창업부스	부스당/ 1개월	10,000원~ 30,000원	○ 보증금 500,000원 별도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찬성위원 6명, 반대위원 1명, 기권위원 2명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19조제2항제3호)
- 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: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9조(이용료의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: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줄일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의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부여로 인한 시설의 손해 발생 및 감면에 따른 손실 보전

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손해 발생 보전액이 약 40백만원으로 예상되어, “한시적인 경비로서 10억원 미만인 경우”에 해당됨

- 산출내역 : $4,362\text{백만원} \times 30\%(\text{이용률}) \times 3\%(\text{할인율}) = 39\text{백만원}$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김 석 천 (02-2133-5028)